

서울특별시

수 100-744 서울 중구 배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551 / 전송 733-9535-6

문서번호 시정 12230-496

시행일자 1993. 6.

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취급		부시장	시장
보존			
기획관리실장	3.8		
시정개발담당관		시정연구관	
조직관리계장		사무국장	
기안	김승		합조

제목 정원규칙개정(안)공포

규칙제 250 호 9992
결재
1993. 6. 25
시장

1. 시정 12230-402('93.6.3)호와 관련입니다.
2. 서울지방경찰청 정원감축에 따른 정원규칙개정안을 지방자치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포코자 합니다.

가. 공포 ~~일자~~ : '93. 6. 25

나. 공포대상규칙 :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

첨부 공포안 1부, 끝.

(제 2 안)

수신 공보1담당관

제목 개정규칙 시보게제 의뢰

1.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을 송부하니 시보게제 공보하기 바랍.

가. 공포 ~~일자~~ : '93. 6. 25

나. 공포대상규칙 :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

첨부 공포안 1부, 끝.

(제 3 안)

수신 법무담당관

제목 개정규칙공포 공보

1.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원규칙중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니 업무에
착오없이 바람.

가. 공포 ~~날~~일 : '93. 6. 25

나. 공포대상규칙 :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원규칙중개정규칙.

청부 공포안 1부. 끝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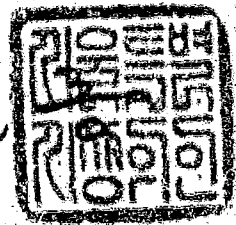
서 율 특 별 시 장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증개정

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시장

서울특별시장 이원



1993년 6월 25일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안

1. 개정이유

-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법제정 및 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소속기관에서 폐지됨에 따라, 지방경찰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감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서울지방경찰청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(686명)
 - 6급이하 54명, 별정직 3명, 기능직 629명

시감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 제3조 제2항
- 예산효과 : 별도효과 필요없음
- 협의 : 생략

서울특별시규칙 제 2410 호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1-2)를 삭제하고, (별표1-3)을 (별표1-2)로 한다.

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 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하게 될 때까지 각각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